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45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8년 6월 22일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2018년 4월 설립 운영 중인 재단법인 ‘서울기술연구원’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반영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·감시 기능을 강화하고,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‘서울기술연구원’을 신설함(안 제33조제1항 제7호바목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7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서울기술연구원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~6. (생략)</p> <p>7. 도시안전건설위원회</p> <p>가.~마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8.~10. (생략)</p>	<p>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도시안전건설위원회</p> <p>가.~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바. 서울기술연구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8.~10. (현행과 같음)</p>